

하우징 차별이란 무엇인가?

하우징 차별은 한 개인이 하우징의 전

과정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가족

신분, 장애, 출신 국가 등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우징 차별은 불법입니다. 페어 하우징

법은 집주인, 판매자, 브로커, 임대자,

보험사, 이웃주민, 등 하우징 산업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차별 고소 서비스

페어 하우징 연락서비스 (FHCS) 는 미

정부와 시, 카운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하우징 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클라이언트의 고소장 작성에 따른 행정적인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이사회

Rillis Money Penny, Jr., President

C. Ann White, Vice President

Russell K. Davis III, Ph.D., Treasurer

Andrea Victor, Secretary

Cleve Breeding

Erika Burney-Hawkins

Robert DeJournett

Todd Evans, Esq.

Sue Turns

여러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아늑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저희 공정
주택마련 서비스(페어 하우징 컨택
서비스)의 사명입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441 Wolf Ledges Parkway

Suite 200

Akron, Ohio 44311

전화 330-376-6191

무료 전화 1-877-376-6191

입주자/집주인 전화 330-376-0359

팩스 330-376-8391

www.fairhousingakron.org

info@fairhousingakron.org



공정 주택거래 기회

하우징 차별

Housing Discrimination - Korean



페어 하우징 컨택 서비스는
주택구입과 관련한 일련의 차별 및
손해를 방지, 제거하고, 균등한
주택마련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FAIR HOUSING CONTACT SERVICE

441 Wolf Ledges Parkway, Suite 200

Akron, Ohio 44311

이 안내장은 에크론과 캔트 시, 서밋 카운티, 그리고
HUD 국에서 지원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집주인 상담
- 주택구입관련 차별대우 대처지원
- 종합적인 주택구입관련 상담
 - 주택자금조달
 - 대출서류검토
 - 초보 주택구입자
 - HECM 역모기지
 - 채무불이행 (Default) /부동산 유질 처분 (Foreclosure)
- 교육 훈련 세미나
- 난청이나 귀머거리, 또는 비영어권 의뢰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 시력이 나쁘신 분들을 위한 큰 활자체로 된 정보 제공

THE FAIR HOUSING ACT

아래 사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출신국가 장애
종교 가정 형편

추가제공 정보:

- 관련정보 소책자:
 - 입주자/집주인 핸드북
 - 집수리 관련 입주자를 위한 가이드
 -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s)
 - 장애인을 위한 공정주택거래 관련사항
- 전문인 교육
- 멤버십

하우징 차별의 예

- 임대자 간섭 및 협박
- 임대, 판매 또는 하우징 관련 서비스제공
- 거짓으로 입주가능 하우징 존재 부인
-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시 평시와 다른 차별적 대우
- 상이한 규칙 및 임대료 요구
- 특정 타운 지역에만 국한하여 임대지 부당 유도
- 해당 이웃특성 변화시 주거지 소유자에게 처분 요구
- 차별적 조언
-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변경 의무 실천 거부

집주인, 판매자, 보험직원, 모기지 브로커 등이 잠재 임대자 및 구매자를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가족 배경, 장애,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적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연방 및 주 페어하우징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귀하께서 하우징 차별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십시오. 330-376-6191 또는 무료전화 877-376-6191. 상담원이 여러분의 문의를 상담해 드릴 것이며 고소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작업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우징 차별로 인해 고소를 결심하시게 되었다면 저희 기관에서 오하이오 시민권리 커미션 또는 US 하우징 및 도심 개발 부서와 연계, 고소작성을 도와드립니다.

FHCS 기관의 소속 대리인 본 과정동안 여러분을 대변해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